

자동차도로 사업 공용 약관

(부속 보안상의 공용 제한)

아타미 인프라 매니지먼트 합동회사

자동차도로 사업 공용 약관

(약관의 효력)

제1조 당사의 경영에 관한 다음의 일반 자동차도로(이하 ‘자동차도로’라고 한다.)의 공용에 관하여 하는 계약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을 따른다.

단,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을 따른다.

아타미 비치 라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미모토몬카와분 다테가쿠보 84번지에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히가시카이간초 85번지의 4까지)

(소재 불명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제2조 당사가 경영하는 자동차도로 사업에 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알기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통지 또는 최고할 사항을 관계 요금 징수소의 대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이를 대신한다.

2. 전항의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는 그 통지 또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용 기간 등)

제3조 자동차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중으로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일 24시간으로 한다.

(사용 요금)

제4조 자동차도로의 사용 요금은 공용하는 날에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은 사용 요금으로 한다.

(사용권)

제5조 사용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보통 사용권
- (2) 횡수 사용권

(사용 요금의 수수 등)

제6조 자동차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이하 ‘사용자’ 라고 한다.)는 소정의 요금 징수소에서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보통 사용권을 받거나 횡수 사용권을 제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당사가 실시하는 캐시리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당사가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권의 소지 등)

제7조 사용자는 전조의 요금 징수소를 통과한 후, 그 자동차도로의 사용을 마칠 때까지 동조의 사용권을 소지하고 당사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의 직원이 사용권을 회수한 경우 및 제6조에 정하는 캐시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당사는 사용자가 전항의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항의 요금 징수소를 통과한 후에 사용권을 분실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요금을 수수한다.

(자동차도로의 부정 사용)

제8조 당사는 자동차도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 요금 외에 그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 요금의 환불 등)

제9조 당사는 미사용이며 유효 기간 내인 사용권(다음 항의 증표를 포함, 이하 동일하다)에 대해 환불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해당 사용권에 표시된 금액(횡수 사용권은 표지에 기재된 판매 금액×미사용권 매수 ÷ 총 매수의 금액)에서 그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이 경우 환불액에 발생한 10엔 미만의 끝자리는 버린다.

2. 당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도로를 공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통 사용권에 대해서는 수수한 사용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제6조의 절차를 밟은 횡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증표를 교부한다.
3. 당사는 전항의 사유로 자동차도로를 공용할 수 없는 기간이 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횡수 사용권의 유효 기간을 그 초과한 일수만큼 연장한다.

4. 전 2항의 규정은 자동차도로를 공용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당사는 사용자가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자동차도로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직원의 지시)

제10조 사용자는 당사의 직원이 자동차도로의 안전 유지 또는 교통 정리를 위하여 하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의 거절)

제11조 당사는 다음 경우에 자동차도로의 공용을 거절한다.

- (1) 자동차도로의 사용이 법령 또는 보안상의 공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자동차도로의 사용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자동차도로의 사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 (4)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특별한 각종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폐쇄하는 경우.
 - (5)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당사는 사용자가 전조 혹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자동차도로의 사용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혹은 전항 제5호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동차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의 책임)

제12조 당사는 자동차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배상한다.

- (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 (2) 당사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동차 상호 접촉 또는 충돌.
 - (3) 도난 및 기타 제삼자에 의한 손해.
 -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2. 전항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사용자가 자동차도로에 진입한 때에 시작하여 자동차도로에서 퇴출한 때에 끝난다.

(사용자의 책임)

제13조 자동차도로 또는 이에 부착된 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사용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물품 판매 등의 금지)

제14조 사용자는 당사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자동차도로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배포, 선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공용 제한

당사 일반 자동차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안상 공용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치수 및 중량

길이	12미터 이하
폭	2.5미터 이하
높이	3.8미터 이하
총 중량	20톤 이하

(2) 최고 속도

승용 자동차	60km/h
승합형 자동차	40km/h
화물 자동차	40km/h

(3) 통행금지

캐터필러가 있는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도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 장치가 있는 자동차